

영등포구의회
제13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08. 1. 28.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박정자의원의외 10인 의원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제안일자 : 2008. 1. 18
- 제 안 자 : 박정자 (11인)

■ 제정(제안) 이유

-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중에서 어려운 경제여건 때문에 안정된 의료 혜택과 건강한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등록 장애인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지원대상(안 제3조)

- 차상위계층 주민 중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함.

● 대상자 선정(안 제4조)

- 급여대상자 선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장이 명단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구청장은 명단에 기록된 자 중 선정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를 심사·결정함

● 환 수(안 제8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환수하도록 함.

■ 관련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5조·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2·제4조
- 「노인복지법」 제4조
- 「장애인복지법」 제30조

■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

-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중랑구, 금천구, 강북구, 양천구, 구로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2에 의거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 속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구현하는데 조례제정의 의미를 두고 있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 **안 제3조 지원대상은** 차상위계층 주민중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 **안 제4조 대상자 선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장이 명단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구청장은 명단에 기록된자 중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를 심사·결정하고
 - **안 제8조에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 **부칙에**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5조·제24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차상위계층 대상자들에게 최저의 의료혜택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참고로 2008년 1월현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는 11개구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 1. 28.

보 고 자 : 이 남 식

- 참고자료 : 1. 관련법령
2.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제정현황

관 련 법 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3.5, 2005.12.23>

11.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권자(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를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③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최저생계비의 변경등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함에 따라 다음연도에 이법에 의한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는 다음연도의 급여신청으로 본다.

③조사대상자의 자료제출, 조사의 위촉, 관련전산망의 이용등 기타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1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라 함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를 말한다.

제4조(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①법 제5조제3항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는 개별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계혈족에 한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2.22, 2007.6.28>

2.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기타 질병·교육·가구특성 등으로 인하여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3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제정현황

구 분	보험료 기 준	지원대상	나 이	예 산
송 파 구 공포 07. 4.16 시행 08. 1. 1	1만원 미만	독거노인세대	만65세이상	공단이 제출한 전체 세대
중 구 공포 07. 4 시행 공포한날	1만원 미만	노인세대	만65세이상	공단이 제출한 70세대 전체*8,000원
동대문구 공포 07. 5.10 시행 08. 1. 1	1만원 이하	노인거주세대 등록장애인세대 국가유공자세대 모부자세대 여성단독세대 만성질환자세대 기타	70세이상 55세이상	공단이 제출한 전체 세대
구 로 구 공포 07. 7.13 시행 08. 1. 1	1만원 미만	노인세대	65세이상	시행규칙으로 세대 축소 예정
양 천 구 공포 07. 7.30 시행 07.11. 1	1만원 이하	노인세대	만65세이상	공단 제출 1,100세대 중 800세대*6,300원
관 약 구 공포 07. 8. 2 시행 08. 1. 1	1만원 이하	노인거주세대 등록장애인세대 국가유공자세대 모부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단독세대 만성질환자세대 기타	65세이상 55세이상	공단이 제출한 전체 세대

구 분	보험료 기준	지원대상	나 이	예 산
서 초 구 공포 07. 9.19 시행 08. 1. 1	1만원 미만	노인가구	만65세이상	미 정
종 로 구 공포 07. 9.28 시행 08. 1. 1	1만원 이하	노인세대 등록장애인세대	만65세이상	공단제출세대중 차상위계층만 월 소요예산 100만원 이내
금 천 구 공포 07.11.28 시행 08. 1. 1	1만원 이하	노인거주세대 모부자가정세대 기타	65세 이상	미 정
강 북 구 공포 07.12.28 시행 08. 1. 1	6천원 이하	노인가구 등록장애인가구 한부모가족가구 18세이하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기타	65세 이상	미 정
중 랑 구 공포 07.12.28 시행 08. 1. 1	1만원 이하	노인 세대 모자·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세대 등록장애인 세대 국가유공자 세대 만성질환자 등 기타	만 65세이상	미 정